

# 『교육논총』 편집위원회 규정

2021. 6. 14. 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이 발행하는 『교육논총』의 편집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설치) 편집위원회는 경인교육대학교 ‘교육연구원 규정’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연구원 내에 둔다.

제3조 (구성)

-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내외, 편집간사로 구성된다.
- ② 편집위원장은 교육연구원장이 겸임하고,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.
- ③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전공과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편집위원 중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책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기능)

- ① 편집위원회는 ‘『교육논총』 논문 투고 및 발간 규정’, ‘『교육논총』 심사 규정’을 정한다.
-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·의뢰하고,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.
- ③ 별도의 규정으로 『교육논총』의 투고, 심사 및 발간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5조 (회의)

- ① 편집위원회는 『교육논총』 발간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- ② 편집 업무상 주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편집위원회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.